

	<h2>교원복무규정</h2>	규정번호	3-1-4
		제정일자	2004.03.01.
		개정일자	2025.10.01.
		개정차수	7차
		소관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기타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여진 것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속을 마치고 임용된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4조(신앙생활) 교원은 신앙생활에 충실하며, 월요예배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복무기강 및 윤리) 교원은 교육관계법령과 대학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청렴결백)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향응을 제공받아서 아니 된다. <신설 2024.09.01.>

2. (품위유지) 교원은 학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부도덕한 행위나 불법행위로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받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4.09.01.>

3. (비밀준수) 교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관련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09.01.>

제6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모든 교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9.01.]

제7조(교원의 복무일) ① 교원은 주5일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② 교원은 주1일을 산학협력일로 할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교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한다.

제9조(책임시간 및 외부출강)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강의시간표작성규정을 따른다.

② 교원이 타대학(타기관)에 출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외부대학(기관) 출강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학협력일을 활용하여 출강하도록 한다.

제10조(근무이탈금지) 교원은 일정기간 근무를 이탈할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연구학기제 운용) 교원의 전공연구와 집필활동 등을 위해 연구학기제를 운용하며 그 방법 및 절차와 처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출근명령) 총장은 필요에 의한 경우 연구일, 휴일, 방학기간 중이라도 교원의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출장) 교원이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출장복명) 출장의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15조(휴가) ① 교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과 기타 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교원이 임신을 한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유급휴가를 허가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출산 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01.]

제16조(사무인계) 교원의 면직, 휴직 또는 보직의 변경을 명령받은 자는 다음 기일 내에 담당사무 소관서류 및 물건의 개요와 미결건명을 지명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행정처장 및 부속기관장: 7일 이내
2. 학과장: 5일 이내

제17조(신상 이동의 보고) 교원은 거주지 이전, 개명, 기타 신분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